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996 |
|----------|-----|

2022. 3. 16.(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3월 16일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소방 기구 신설 및 도정현안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 사항을 조직 효율성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신설 : 충북안전체험관(직속기관)

○ 분장사무 조정

- 신설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 재난안전실

- 이관

-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 → 충북안전체험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과 충북안전체험관 신설에 대한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안 제6조의2(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실의 중대재해 전담팀 신설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둘째, 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충북안전체험관 기구 설치에 따라 설치·관장·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이는 당초 중대재해TF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였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충북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제14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3장제6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충북안전체험관

제32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의3(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의4(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별표 2]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2항 관련)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 청주시 관 내 |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
|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 청주시 관 내 |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
|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 충주시 관 내 | 충주시 일원 |
|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 제천시 관 내 | 제천시 일원 |
|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 보은군 관 내 | 보은군 일원 |
|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 옥천군 관 내 | 옥천군 일원 |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 영동군 관 내 | 영동군 일원 |
|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 증평군 관 내 | 증평군 일원 |
|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 진천군 관 내 | 진천군 일원 |
| 충청북도 괴산소방서 | 괴산군 관 내 | 괴산군 일원 |
|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 음성군 관 내 | 음성군 일원 |
|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 단양군 관 내 | 단양군 일원 |
| 충북안전체험관 | 충청북도 관 내 | 충청북도 일원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 16. (생략)</p> | <p>제6조의2(재난안전실)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u></p> <p>5. ~ 17. (현행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p> |
| <p>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략)</p> <p>7. <u>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u></p> <p>8.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 <p>제14조(소방본부)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7. ~ 10.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절 충북안전체험관</u></p> <p><u>제32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체험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u></p> |

<신 설>

<신 설>

제32조의3(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의4(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장 소방체험관

- 제14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